

수신자
(경유)
제 목 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

귀하가 ()년 ()월에 신청한 ()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신 청 인		성 명		생 년 월 일	
		주 소			
1. 결정 내용 (년 소득분) (단위 : 원)					
구 분	결 정 금 액	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	환 수 (차 감) 액	지 급 금 액	
근로장려금					
자녀장려금					
계					
2. 결정 근거					
3.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					
※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					

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
우	주소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)	전송()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		/ 공개구분	

4.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(년 소득분) (단위: 원)

환수대상 금액			당해연도 환수한 금액			미환수액 (⑦=①-④)
계 (①=②+③)	전년 이월 미환수액 (②)	당해연도 발생액 (③)	계 (④=⑤+⑥)	근로 장려금 (⑤)	자녀 장려금 (⑥)	

< 환수내역 안내사항 >

- 환수대상 금액의 계(①)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(②)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(③)의 합계입니다.
 - 당해연도 발생액(③)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.
-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(④)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(⑤)과 자녀장려금(⑥)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.
- 미환수액(⑦)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(①)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(④)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 - 미환수액은 5년간 발생하는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, 5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. 다만,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.